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5. 26 선고 2020가단11782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4. 7.

판 결 선 고 2021. 5. 26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D1) 사이에 2019. 5. 8. 체결된 3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5,596,9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5,596,9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2) 및 피고는 원고에게 5,596,9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8. 7. 1. 소외 D로부터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를 임대차보증금 20,000,000원, 임료 월 500,000원, 임대차기간 6개월(2018. 7. 3.부터 2019. 1. 2.까지)로 하여 임차하였고,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9. 1. 2.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반환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잔액 19,500,000원의 반환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, D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{ 2019. 10. 3. 지급명령 확정(이 법원 2019차920 임대차보증금반환)}.

다. D는 2019. 4. 18. 소외 I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115,000,000원에 매도하였고(2019. 4. 25. 소유권이전등기 경로), 2019. 5. 18. 아들인 피고에게 위 매각대금 중 합계 3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라. D는 2020. 2. 17.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은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였다(2019카명1371 재산명시).

마. D는 2019. 12. 19. 원고에게 금 15,000,000원을 지급하였는바, 원고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채권(위 지급명령상 임대차보증금 잔액,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)은 이 사건 제소일(2020. 10. 19.) 기준 합계 5,596,991원(= 잔액 4,500,000원 +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익일인 2019. 9. 19.부터 위 일부 변제일 전날인 2019. 12. 18.까지 지연손해금 583,397원 + 2019. 12. 19.부터 이 사건 제소 전인 2020. 10. 15.까지 지연손해금 446,794원 + 독촉절차비용 66,800원)에 이른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의 전체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

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점(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53841 판결) 등에 비추어,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D는 채무초과 상태 내지 아래 매각 및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짐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I에게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 중 30,000,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,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구성하고, D의 사해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고와 D 사이에 2019. 5. 8. 체결된 3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D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채권 합계액 5,596,9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,596,9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(가액배상)을 주장하면서 특별한 근거 없이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,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).

나.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D와 같이 출자하여 운영하다가 폐업한 편의점 정산금, D 입원 및 간병인 비용 등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 등을 위하여 D로부터 30,000,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, 사해행위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,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내지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피고와 D의 모자 관계,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등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, 피고가 주거지 재건축 비용 마련에 힘들어 하는 것을 본 D가 30,000,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 자체로 오히려 증여로 볼 소지가 있는 점, 피고가 D의 채무초과 및 사해행위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의 위 주장 내지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

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홍성욱

1) 주민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주소 : 부산 중구 E, F호

2) 변론기일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‘10,000,000원의 증여계약’은
‘30,000,000원의 증여계약’의 오기임이 명백하다.